

## 보도자료

2010년 11월 18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가. 이용자보호과 이재범과장(2670) 나. 뉴미디어정책과 손승현과장(2450)  
다. 방송채널정책과 김영관과장(2470)

[보고안건]

가. 신규방송사업정책TF 김영관과장(2470)

# 2010년 제67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 [의결안건]

가.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의 무선데이터 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방송법 제17조 및 전파법 제22조에 따라, 안동문화방송(주) 등 6개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한 결과,

- 안동문화방송(주) 등 5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를, (주)강원민방에 대해서는 재허가  
보류를 의결함

< 재허가 조건 >

사업자명	조건 내용				
<b>5개사 공통</b>	1. 최초 지상파DMB 사업 허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방송 보조국 구축계획(2007~2010년)을 아래 표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단, 기한은 준공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2011년 12월까지	2012년 6월까지	2012년 12월까지	합 계
	안동문화방송(주)	1개국 (2개국)	(2개국)	(2개국)	1개국 (6개국)
	(주)케이엔엔	1개국 (2개국)	1개국 (2개국)	(1개국)	2개국 (5개국)
	(주)대구방송	1개국 (2개국)	1개국 (2개국)	(2개국)	2개국 (6개국)
	(주)광주방송	2개국	1개국	(2개국)	3개국 (2개국)
	(주)제주방송	(1개국)			(1개국)
	※ ( )는 출력 100W 이하 방송보조국, 그 외는 출력 1~2kW 방송보조국				
2. 위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포함하여 2013년까지의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재허가 이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2013년까지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재허가 대상 5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

**다. 2011년도 공익채널 선정에 관한 건**

○ 방송법 제70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의거, 2011년도 공익채널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기로 의결함

- 사회 복지 분야 : 한국직업방송(Work TV), 복지TV, 육아방송(Korea Childcare Broadcasting)
- 과학·문화 진흥 분야 : 아리랑TV, 사이언스TV(Science TV), 예술TV Arte
- 교육 지원 분야 : EBS 플러스1 수능전문, EBS English, EBS 플러스2 중학/직업

※ 총 22개 채널이 2011년도 공익채널선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음

- 금번에 선정된 공익채널의 유효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분야별로 1개 이상의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함

## [보고안건]

### 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 (첨부 참조)

-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도입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 을 보고함

#### < 정책방안의 주요내용 >

- 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 기존 홈쇼핑 PP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선
  -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
  -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 강화
- ②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방안
- ③ 향후 추진 일정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 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12월 중 의결될 예정이며,
  -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도입의 경우 정책방안 의결 후 선정절차를 진행하여 '11년 1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첨부]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 주요내용

---

### 1. 정책방안의 주요내용

#### 가. 비전과 정책목표

- (비전) 홈쇼핑 채널정책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 (정책목표) ①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② 홈쇼핑 채널 선택기회 확대와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시청자/소비자 복지 향상'

#### 나. 정책 추진방향

##### ① 기존 홈쇼핑 PP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선

- 홈쇼핑 PP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를 재승인 심사 시 적극 반영
  -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납품업체 민원 처리기구 마련, 방송법령 개정 등

##### ②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

- 중소기업 지원, 시청자·소비자 복지향상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

##### ③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 강화

- 홈쇼핑 PP를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 및 판매수수료 인하 등 합리적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 강화

※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홈쇼핑 맞춤형 우수 중소기업제품 발굴 등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추진

## 2.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방안

### 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성격

- (사업자 수)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1안)과 2개 이상의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2안)으로 구분
- (채널 운영)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운영에 대해 중소기업제품을 100% 편성하는 방안(1안)과 중소기업제품을 일정비율(80%) 이상 편성하는 방안(2안)을 제시
- (채널 소유) 신청자격의 범위(최대주주)를 중소기업 및 공공적 성격의 단체로 제한하는 방안(1안), 중소기업, 공공적 성격의 단체 및 관련 민간 단체로 제한하는 방안(2안),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방안(3안) 등 제시
  -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3안) 심사단계에서 중소기업 중심 주주 구성을 우대하거나 대기업 참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검토 가능
- ※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기존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과락처리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와 연계)
- 또한 기존 홈쇼핑 PP의 지분참여에 대해서는 전면 제한하는 방안(1안), 주요 주주(5% 이상)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2안),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3안), 허용하는 방안(4안) 등 제시
- ※ 기존 홈쇼핑 PP(특수관계자 포함)의 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1안, 2안, 3안)을 선택할 경우 구체적인 제한방안은 세부심사기준에 반영

### ② 심사기준 구성 및 배점

- (심사기준 구성)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 등 세 단계로 구성
- 심사사항은 방송법 제10조 제1항 규정 등을 고려하여 5개, 심사항목은 총 20개로 구성

- **(심사사항별 배점)** 기존 '01년 홈쇼핑 PP 사례를 참고하되, 중소기업 전용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사항별 배점 비중을 조정
  - 주주 구성의 적정성, 거래관계 개선 등을 포함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중소기업제품 방송편성 비율 등을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배점 비중 강화

심사사항	중기전용 홈쇼핑 PP	2001년 홈쇼핑 PP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30% (+5)	2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5% (+5)	20%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5%	2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0%	1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10% (-10)	20%

### ③ 심사기준 관련 주요사항

-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 5% 이상 참여 시 타 컨소시엄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방안(1안), 5% 이상 참여 시 타 컨소시엄에 5% 이상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2안), 제한없이 허용하는 방안(3안)을 제시
- **(승인 최저점수 설정)** 전체 총점은 70% 이상으로 설정
  - 심사사항별 60% 이상, 핵심 심사항목에 대해 5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1안), 핵심 심사항목에 대해서만 6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2안), 심사사항·심사항목별 최저점수를 설정하지 않는 방안(3안)을 제시
- **(납입자본금)** '중소기업 전용'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가진 홈쇼핑 PP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 납입자본금으로 1,000억 원을 제시
  - ※ 중소기업제품 편성 관련 승인조건이 부과된 사업자(우리 농수산)의 초기 1년(2002년) 영업비용을 현재금액으로 환산
  - 심사방안으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배점의 100%, 충족 못할 경우 0점 처리하는 방안(계량 절대평가)과 신청법인이 제시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계량 상대평가)을 제시

- **(출연금)** 최소 출연금 규모는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방안(1안)과 특정 금액으로 지정하는 방안(2안)을 제시
- 심사방안으로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배점의 100%, 충족 못할 경우 0점 처리하는 방안(계량 절대평가)과 신청법인이 제시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계량 상대평가)을 제시

### 3. 향후일정

- 정책방안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10. 11~12월)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 의결('10. 12월)
- 신규 홈쇼핑 PP 세부심사기준 위원회 의결 및 신청 공고('10. 12월)
- 신규 홈쇼핑 PP 신청서 접수, 심사계획 의결 및 사업자 선정('11. 1월)

※ 세부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